

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04. 7. .

제출자 구미시장

□ 수정이유

- 본청 한시정원인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의 명칭을 변경하여
 -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, 통계 및 일사관리기동처리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과 신설을 계획하였으나
 - '04. 6. 28일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“여유기구제”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“여유기구” 설치시까지 주민자치과 신설을 보류코자 함.
- 자치단체 혁신, 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혁신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담부서를 지정코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주민자치과 신설은 『여유기구』 운영시까지 보류
- 혁신분권 전담부서 지정
 - 전담부서 : 기획정보실 기획담당관실
 - 담당사무
 - 지역단위 혁신·분권·균형발전업무
 -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

□ 참고사항

- 경북도 자치행정과-3426(04. 4. 29)호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 지침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8(04. 7. 2)호의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

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제2항 제9호중 “전산”을 “전산, 통계”로 한다

안 제6조 제1항중 “총무과, 주민자치과”를 “총무과”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중 제7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1호로 한다.

5.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, 통계

6. 생활민원총괄, 일사천리가동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

안 부칙 제1조중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”을 “이 조례는”으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한다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구미시의회의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중 총무과를 총무과, 주민자치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 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) ①(생략) ②(생략) 1. - 5. (생략) <신설> <신설> 6. (생략) 7. <u>전산 통계</u> ,----- 8. - 12. (생략)	제5조(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-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지역단위 혁신·분권·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</u> 7. <u>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</u> 8. (현행과 같음) 9. <u>전산</u> ,----- 10. - 14.(현행과 같음)	제5조(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) ① - ②(개정안과 같음) 1.- 8. (개정안과 같음) 9. (현행과 같음) 10. - 14. (개정안과 같음)
제6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----- <u>총무과</u> ,----- ----- ②(생략) 1. - 4. (생략) <신설> <신설> 5. - 11. (생략)	제6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----- <u>총무과, 주민자치과</u> ,----- ----- ②(현행과 같음) 1.-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, 통계</u> 6. <u>생활민원총괄, 일사처리기동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</u> 7. - 13. (현행과 같음)	제6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(현행과 같음) ②(개정안과 같음) 1. - 4. (개정안과 같음) <삭제> <삭제> 5. - 11. (개정안과 같음)
	부칙 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규정)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. 제3조(다른조례의 개정)①구미시의회의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제2호중 총무과를 총무과, 주민자치과로 한다.	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<삭제> <삭제>